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처분에 대한 재송수단 안내 의무 신설 >

■ 광상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9372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신은호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처분에 대한 쟁송수단 안내 의무 신설	3

I. 개요

1. 광상언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9372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광상언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6. 6. 19.
- (3) 회 부 일 : 2026. 7. 2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은 2025년 3월 18일 신설됨. 그 내용은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또, 같은 날 신설된 제36조제6항은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3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한편, 「긴급복지지원법」 제16조제1항은 제8조제3항에 따른 결정이나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반환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송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행정기본법」 제36조제6항에 의해 「긴급복지지원법」상 이의신청 절차에도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이 적용되는 결과,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 그러나 「긴급복지지원법」 제16조제2항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이 위법·부당한 경우 시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할 의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제기기간에 관한 안내 의무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즉, 「긴급복지지원법」 제16조의 규정만으로는 결정 통지 의무 및 쟁송수단 안내 의무가 없기 때문에, 「행정기본법」과 법률 규정체계를 동일하게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의신청인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받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법」 제16조를 개정하고자 함(안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결정을 통지하는 경우 신청인
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결정을 통지하기 전에 이미 신
청인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
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안내하
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16조¹⁾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현장 확인 결과에 따른 지원 결정²⁾이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결정된 사람에 대한 반환명령³⁾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송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1) 「긴급복지지원법」

제16조(이의신청) ① 제8조제3항에 따른 결정이나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반환명령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송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긴급복지지원법」

제8조(현장 확인 및 지원)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긴급지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위기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 확인 결과 위기상황의 발생이 확인된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제9조에 따른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을 결정하여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신속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지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우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할 수 있다.

3) 「긴급복지지원법」

제15조(지원중단 또는 비용환수)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것으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긴급지원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사람에게는 그 초과 지원상당분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반환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법 제16조에 따른 이의신청 통계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6월 말
이의신청	3	6	10	19	15	3
인용	-	2	2	1	3	-
기각	3	4	8	18	12	3

자료: 보건복지부

□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원결정 및 반환명령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심판법」 4)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 5)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긴급지원은 대상자의 위기상황에 대한 판단 및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신속하게 결정되는 급여인 만큼,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거나 법령 적용에 대한 판단 차이로 인해 급여 결정에 대한 이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급여 결정에 불복하는 수급권자 등이 적절한 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 결과와 함께 이후 이용 가능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 후속 쟁송수단6)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긴급지원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4) 「행정심판법」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5) 「행정소송법」

제19조(취소소송의 대상)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6) 「사회보장기본법」

제39조(권리구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행정청의 처분(「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이러한 점에서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이용 가능한 구제 수단 및 그 절차를 명확히 안내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고, 특히 위기상황에 처한 국민을 신속히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긴급지원의 경우 단순한 처분의 적법성 판단을 넘어 신속한 권리구제 절차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 다만,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⁷⁾은 행정청이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 그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행 제도에서도 지침 등을 통해 행정청은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후속 쟁송수단과 제기기간 등을 함께 안내하고 있으며, 실제 기초생활보장급여 관련 업무에서도 이러한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이의신청 결과 통지 및 쟁송수단 안내에 관한 사항을 개별법에 명확히 규정한다는 의미가 있으나, 「행정기본법」을 통해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을 다시 규정하는 측면도 있으므로, 개별법에 별도 규정을 둘 실익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7) 「행정기본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⑤ 행정청은 제2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이미 신청인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안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이의신청 결과 통지 및 구제수단·절차를 명확히 하려는 입법취지에 공감하나,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긴급복지지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내용을 통지하고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같이 안내하고 있어, 개별법에 별도로 동일한 규정을 둘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임.

□ (법제처) 이의신청인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나, ① 「긴급복지지원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행정기본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향후 「행정기본법」이 개정될 경우 개별법과 「행정기본법」간의 내용상 불일치가 발생하게 되어 그 때마다 매번 추가로 해당 법률을 개정해야 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관련하여 이의신청인이 관련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으로 기존 입법례⁸⁾와 같이 「행정기본법」에 따른다는 취지의 연결 규정을 두는 방안이 있음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97

8)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이의신청의 특례)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석유의 수입·판매 부과금) ⑦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부과금 또는 가산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